



FTA ANALYSIS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와 활용 현황

김세라 | 국제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EREPORT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와 활용 현황¹



김세라
국제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¹ 본 내용은 RCEP 발효·대응 기업지원 정보 제공(국제원산지정보원, 2022)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을 밝힘

1 들어가며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MEGA FTA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얼마 전 발효 1주년을 맞았다.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기본이 되는 원산지증명서 역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방식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방식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모든 원산지증명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본으로 수입 시에만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방식 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일본 원산지증명제도 운영 현황 및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와 일본 교역 동향

1. 우리나라와 일본 교역 동향

코로나19(COVID-19) 및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2022년 우리나라 대일 수출금액은 2021년 대비 1.8% 증가한 30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우리나라 4번째 수출 대상으로 전체 수출의 4.5%, 수입의 7.5%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교역국이다.

[표 1] 우리나라와 일본 교역동향(2012~2022년)

[단위: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2	30,606	1.8	54,712	0.1	-24,106
2021	30,062	19.8	54,642	18.7	-24,581
2020	25,098	-11.7	46,023	-3.3	-20,925
2019	28,420	-6.9	47,581	-12.9	-19,161
2018	30,529	13.8	54,604	-0.9	-24,075
2017	26,816	10.1	55,125	16.1	-28,309
2016	24,355	-4.8	47,467	3.5	-23,112
2015	25,577	-20.5	45,854	-14.7	-20,278
2014	32,184	-7.2	53,768	-10.4	-21,584
2013	34,662	-10.7	60,029	-6.7	-25,368
2012	38,796	-2.2	64,363	-5.8	-25,5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23.03.17)

그러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간 교역구조 상 가장 큰 특징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 주요 부품·소재 등의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MTI 3단위 기준)을 살펴보면 석유제품, 철강판, 반도체,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반도체의 경우 2021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대비 37.8% 증가한 약 13억 5천만 달러였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농약 및 의약품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두 배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인 정밀화학원료 및 합성수지 역시 2020년 대비 각각 35.3%, 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우리나라의 일본 주요 수출품목(MTI 3단위)

[단위: 백만불, %]

순번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5,098	-11.7	30,062	19.8	30,606	1.8
1	석유제품	2,900	-31.7	4,678	61.3	5,134	9.7
2	철강판	1,661	-23.4	2,399	44.4	2,414	0.6
3	반도체	980	-8.1	1,366	39.4	1,350	-1.2
4	농약 및 의약품	530	21.0	656	23.7	1,216	85.4
5	정밀화학원료	885	-16.5	1,022	15.5	1,197	17.0

순번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6	합성수지	586	-20.3	844	44.1	1,012	20.0
7	금은 및 백금	1,045	40.0	1,667	59.5	963	-42.2
8	비누치약 및 화장품	664	62.1	801	20.7	750	-6.4
9	플라스틱 제품	764	-5.5	772	1.1	678	-12.2
10	컴퓨터	413	52.0	445	7.6	568	27.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검색일: 2023.03.17)
 주 : MTI 3단위 기준

3.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입품목

한편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대일 수입금액은 547억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MTI 3단위 기준)인 반도체의 경우 2021년 대비 약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12.5% 감소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일 주요 수출품목이면서 수입품목인 철강판의 경우 3위를 차지했으며, 이 외에도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합금철 선철 및 고철 등이 존재했다.

[표 3] 우리나라의 일본 주요 수입품목(MTI 3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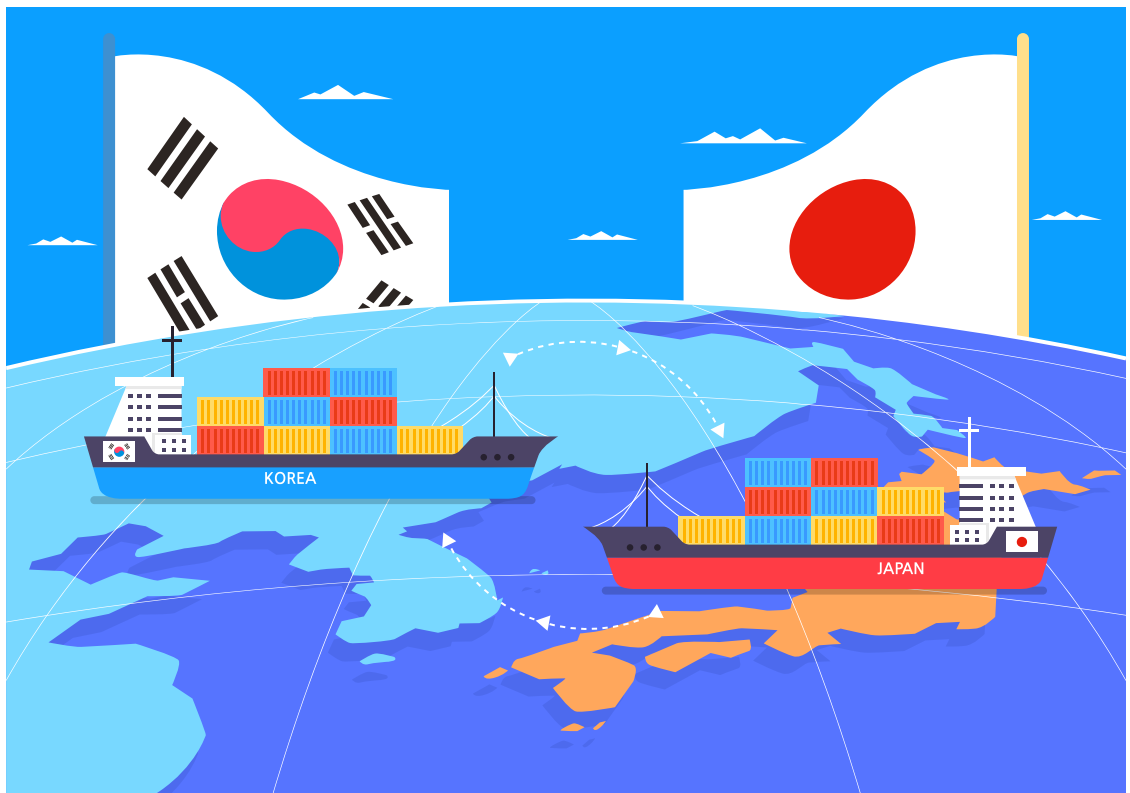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

순번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6,023	-3.3	54,642	18.7	54,712	0.1
1	반도체	4,955	10.6	5,889	18.9	7,768	31.9
2	반도체제조용장비	4,382	32.9	6,326	44.4	5,533	-12.5
3	철강판	1,775	-26.2	2,630	48.2	2,968	12.8

순번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4	플라스틱 제품	2,404	6.3	2,535	5.4	2,082	-17.9
5	합금철 선철 및 고철	970	-35.9	1,707	76.1	1,720	0.8
6	기초유분	1,049	-33.8	1,384	31.9	1,337	-3.4
7	계측제어분석기	1,375	0.0	1,229	-10.7	1,196	-2.6
8	금은 및 백금	547	50.5	547	0.1	1,151	110.3
9	농약 및 의약품	631	-3.2	650	3.1	1,140	75.2
10	정밀화학원료	1,333	-15.3	1,509	13.2	1,103	-2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검색일: 2023.03.17)

주 : MTI 3단위 기준



3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

1. 일본 EPA·FTA 체결 현황

일본은 2002년 일-싱가포르 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기준 총 20건의 특혜무역협정을 발효했다.

일본은 자국의 독자성 강조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FTA 대신 EPA를 체결하고 있다. EPA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FTA라 할 수 있다.²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이 체결한 EPA 대부분은 기관발급에 해당하는 제3자

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2015년 일-호주 EPA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주요 거대 선진 경제권과 체결한 협정에서 자기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기신고제도는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가 자신의 정보에 근거해 스스로 원산지 신고를 작성함으로써 특혜세율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제도와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제도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RCEP 발효 즉시 수입자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본 EPA/FTA/무역협정 체결 현황과 원산지증명제도

EPA/FTA/ 무역협정	발효	제3자증명제도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기신고제도
일-싱가포르	2002년 11월	○	-	-
일-멕시코	2005년 4월	○	○	-
일-말레이시아	2006년 7월	○	-	-
일-칠레	2007년 9월	○	-	-

2 국제원산지정보원(2021), RCEP 발효 대비 현행 FTA 이행절차 및 원산지결정기준 연구

EPA/FTA/ 무역협정	발효	제3자증명제도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기신고제도
일-태국	2007년 11월	○	-	-
일-인도네시아	2008년 7월	○	-	-
일-브루나이	2008년 7월	○	-	-
일-아세안	2008년 12월	○	-	-
일-필리핀	2008년 12월	○	-	-
일-스위스	2009년 9월	○	○	-
일-베트남	2009년 10월	○	-	-
일-인도	2011년 8월	○	-	-
일-페루	2012년 3월	○	○	-
일-호주	2015년 1월	○	-	○
일-몽골	2016년 6월	○	-	-
CPTPP	2018년 12월	-	-	○
일-EU	2019년 2월	-	-	○
일-미	2020년 1월	-	-	○ (수입자만 해당)
일-영	2020년 1월	-	-	○
RCEP	2022년 1월 (2020년 11월 서명)	○	○	발효 후 10년 또는 20년 이내 도입 ³

자료 : JETRO(2022), RCEP 협정의 특혜관세 활용에 대하여 - RCEP 협정 해설서
https://www.jetro.go.jp/ext_images/theme/wto-fta/rcep/rcep.pdf

3 한국,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은 협정 발효일 후 10년 내(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협정 발효일 후 20년 내) 이행 예정임

2. 원산지증명제도

(1) 기관발급

① 제3자 증명제도

일본은 원산지증명제도에 따라 관련 법령이 상이하며, 기관발급에 해당하는 일본의 제3자 증명제도의 경우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표 5] RCEP 원산지증명 제도 관련 법령

원산지증명 제도	관련 법령
제3자증명제도(第三者證明制度) 또는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서 제도 (第一種特定原產地證明書制度)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⁴ (經濟連携協定に基づく特定原產地證明書の発給等に関する法律)
인증수출자제도(認定輸出者制度) 또는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서 제도 (第二種特定原產地證明書制度)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⁵ (經濟連携協定に基づく特定原產地證明書の発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⁶ (經濟連携協定に基づく特定原產地證明書の発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은 6개 장의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와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공포일: 2004.11.25./2014년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16.04.01.)
-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와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경제연계협정을 명시하고 있음(공포일: 2005.02.09./2021년 정령 제186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22.01.01.)
-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와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공포일: 2005.02.25./2021년 경제산업성령 제83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22.01.01.)

원산지증명 제도	관련 법령
자기신고제도 (自己申告制度)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⁷ (經濟連携協定に基づく申告原産品に係る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法律)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⁸ (經濟連携協定に基づく申告原産品に係る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⁹ (검색일: 2022.04.20.)

일본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해당하며, 수출자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서류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전달받아야 한다.¹⁰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공회의소에 “기업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등록은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상세 절차는, 일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업등록이 완료되면,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식별번호·비밀번호 통지서』가 신청 담당자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동 통지서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업등록번호, 식별번호(ID·PW) 및 발급시스템 URL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향후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일본에서 제3자 증명방식을 규정한 협정은 대표적으로 일-싱가포르 EPA, 일-멕시코 EPA, 일-인도네시아 EPA, 일-아세안 EPA, 일-필리핀 EPA, 일-스위스 EPA, 일-베트남

7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은 4개 장의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 신고와 관련된 규정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공포일: 2014.11.19./2016년 법률 제108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18.12.30.)

8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 신고가 활용될 수 있는 경제연계협정을 명시하고 있음(공포일: 2014.12.12./2021년 정령 제163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22.01.01.)

9 일본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i/hourei.html

10 국제원산지정보원(2021), RCEP 발효 대비 현행 FTA 이행절차 및 원산지결정기준 연구

EPA, 일-인도 EPA, 일-페루 EPA, 일-호주 EPA, RCEP 등이 있다.

한편 일-싱가포르 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가 다른 협정들과 상이함에 따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자율발급

①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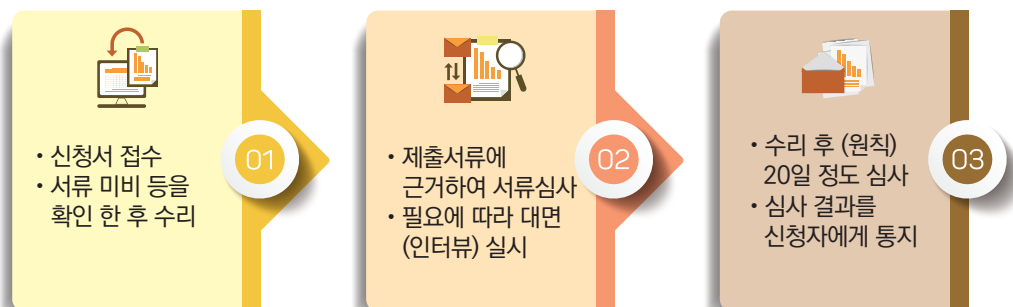
일본 인증수출자 제도의 주요 근거 법령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 증명제도와 동일한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정기적으로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내책임자를 배치 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체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RCEP 협정문 부속서 3-나에 따라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에 따라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시 등록면허세 제2조2에 의거 과세 의무를 진다.(9만엔)

[표 6] 일본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자료 : 경제산업성(2020), 경제연계협정(EPA) 인증수출자자기증명제도 신청·이용 안내서

② 자기신고제도 자율발급[수출자/생산자/수입자]

제3자증명제도와 인증수출자 제도의 경우 관련 주요 근거 법령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자기신고제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법령 이외에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존재한다.

일본의 특혜무역협정(EPA·FTA) 체결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일-호주 EPA를 시작으로 CPTPP, RCEP 등 여러 특혜무역협정에서 자기신고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자기신고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제3자 증명 제도와 다르게 수입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하여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일본의 수출자·생산자·수입자 모두 인증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방식과 동일하게 RCEP 협정문 부속서 3-나에 따라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들을 기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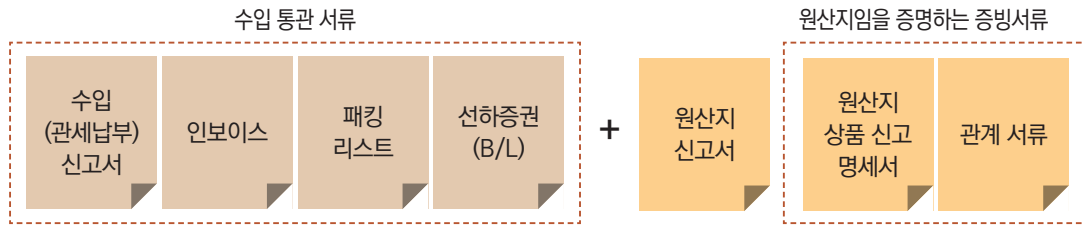
현재 일본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제도와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제도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수출자·생산자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수출 당사국 및 수입당사국 양 당사국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한정하고 있으며 RCEP 발효 시 동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국가는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이다.

한편 수입자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할 경우

부속서 3-나(원산지 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및 부호체계(HS)(6 단위)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생산자의 식별번호
- 바. 고유 참조번호
- 사. 원산지 결정 기준
-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증명
- 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상품의 수량
-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표 7] 자기신고제도(수입자) 활용 시 수입신고 서류



자료 : 재무성관세국·세관(2021),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서 RCEP

수입자는 물품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할 충분한 정보 및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류를 의미한다. 관계 서류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BOM), 제조공정도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에서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 시 요구되는 통상적인 수입통관 서류 및 원산지 신고서 외에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일명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및 “관계 서류¹¹⁾”)의 제출도 요구된다.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란 원산지신고서에 작성된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고, 관계 서류란 원산지신고명세서에 기재한 내용의 근거



11 일부의 경우 자료 제출의 생략이 가능함(ex 체약국에서 완전히 얻을 수 있는 상품인 경우로 통관관계서류에 의해 완전생산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표 8]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작성 예시

<原産品申告明細書の記載例>

原産品申告明細書
 (RCEP 協定)

1. 仕入書の番号及び日付 ABC01234 2022年3月20日	2. 原産品申告書における商品の番号 1	3. 商品の関税分類番号 2823.00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인보이스 번호 및 날짜 물품의 HS CODE	
4. 適用する原産性の基準 <input type="checkbox"/>WO <input checked="" type="checkbox"/>PE <input type="checkbox"/>CTC · <input type="checkbox"/>RVC · <input type="checkbox"/>CR <input type="checkbox"/>ACU <input type="checkbox"/>DMI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5. RCEP 原産国 싱가포르				
6. 上記 4. で適用した原産性の基準を満たすこと及び上記 5. の RCEP 原産国の決定に関する説明 싱가포르의 NEW CHEMICAL CO., LTD.가 同국에서 製造した 二酸化탄 (第 2823.00 号)을 輸入합니다. 同社は,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중국, 베트남에서 材料를 調達し, 二酸化탄을 製造하고 있습니다. 本品에 使用하는 材料의 一覽은 別添의 とおり입니다. 此의 中, ② 塩素 (第 28.01 項)에 関해서는, 非原産의 塩化 나트륨 水溶液 (第 25.01 項)에서 이온 交換膜法에 依り 製造하고 있으며, 品目別規則 (CTH)을 滿た하고 있는 ことから 베트남의 原産品입니다. ③ 酸素은, 싱가포르에서 空氣를 壓縮 冷却 製造하고 있는 ことから, 싱가포르의 原産品입니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중국, 베트남에서 材料를, 一 또는 二 以上의 締約國에서 原産 材料에 である ことから, 本品은 原産 材料의 只 なる 産品으로서 싱가포르의 原産品과 認められます. 또한, 싱가포르에서 RCEP 協定 第 2·6 條 5에 規定하는 輕微한 工程 以外의 生産 工程이 行われている ことから, 「RCEP 原産國」은 싱가포르입니다. 上記 事實은 別添의 總部 品表 (材料 一覽表)에 依り 確認할 수 있습니다.				
7. 上記 6. の説明に係る証拠書類の保有者 <input type="checkbox"/> 生産者、 <input type="checkbox"/> 輸出者、 <input checked="" type="checkbox"/> 輸入者				제4번란의 체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 작성
8. 其他の特記事項				제6번란의 작성한 설명과 관련된 증빙서류 보유자(保有者)
9. 作成者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税関商事株式会社 東京都港区海岸 2-7-68 (代理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作成日 2022年3月31日				

※WO: 完全生産品、PE: 原産材料のみから生産される産品、CTC: 関税分類変更基準、RVC: 付加価値基準 (域内原産割合)、CR: 加工工程基準 (化学反応)、ACU: 累積、DMI: 僅少の非原産材料

자료 : 재무성관세국·세관(2021),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서 RCEP

[표 9] 관계 서류 예시

総部品表 (材料一覧表)

총 부품표(재료일람표)


품명	品名 二酸化チタン (税番: 2823.00)	HS CODE : 2823.00
품번	品番 CT2012-1	
제조사 (업체)	製造者 材料① XXX Australia CO.,LTD. XXX ABC Road, XXX, Australia 材料② XXX Vietnam XXX CO.,LTD. XXX ABC Road, XXX, Vietnam 材料③ NEW CHEMICAL CO.,LTD. XXX ABC Road, XXX, Singapore 材料④ XXX P. XXX, China	

材料名	HS	製造 (調達) 国	備考
① チタン鉱	26.14	オーストラリア	オーストラリアで採掘
② 塩素	28.01	ベトナム	ベトナムで製造
③ 酸素	28.04	シンガポール	シンガポールで製造
④ コークス	27.04	中国	中国で採掘


写真

사진(재료)


材料①




材料②



材料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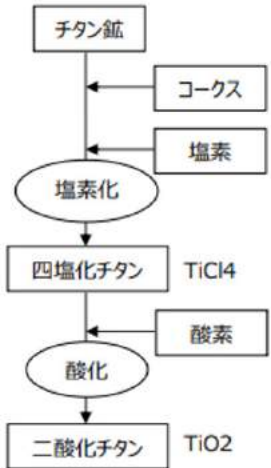


材料④



製造工程

제조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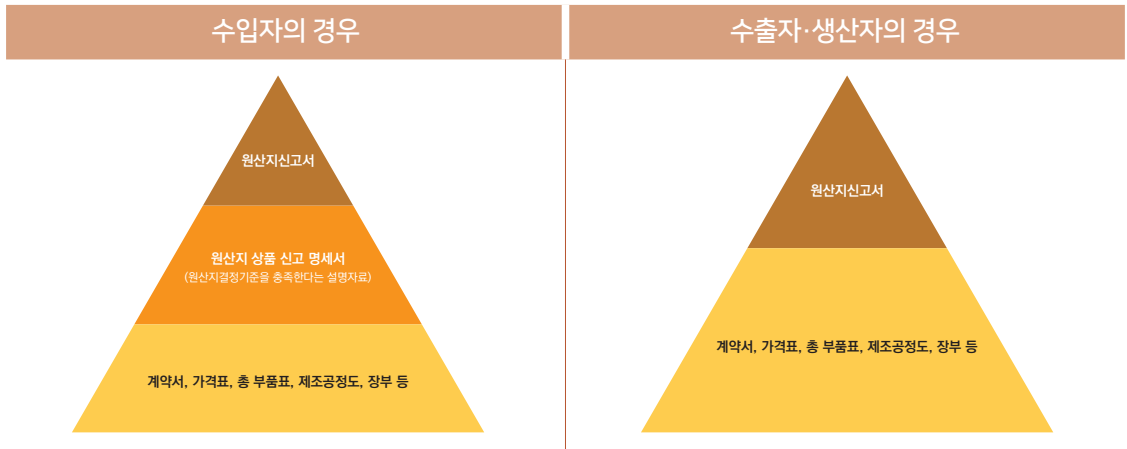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관세국·세관(2021),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서 RCEP

마지막으로 RCEP 협정문 제3.27조 및 일본 자국 내 법령에 의거 일본 수입자는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5년간¹²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 및 생산자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표 10] 기록보관용 서류



자료 : 재무성관세국·세관(2021),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서 RCEP

4 맺음말

일본은 RCEP 당사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양자·다자간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이번 RCEP 체결을 통해 FTA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

이에 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일본을 중심으로 RCEP 이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RCEP 체결로 양국간 신고역·투자 활성화 기틀을 마련한 만큼 본 고의 내용들이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일 교역시 이해를 돕고 RCE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12 수입자 보관서류와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의 경우와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의 경우로 구분되는데, 모두 동일하게 5년간 서류 보관의 의무를 가진다. (단 일부 서류의 경우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